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57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25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2. 제안이유

-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의 범위에 장애인의 배우자 가족을 포함하고, 장애인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포 및 외국인 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하며, 외국인 투자 감면 규정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공동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정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포 등을 증명서류로 추가함(안 제3조).
-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
- 다. 조례가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8조).
- 라. 지역자원시설세 분류 체계 변경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함(안 제 5조, 제9조 및 제10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2. 27.~3. 18.) 결과: 의견있음.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요구</li> <li>-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한옥의 경우 종로·성북구는 구세감면조례로 한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감면신설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미반영</u></li> <li>- 입법예고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자치구 조례 등 별도 개정검토가 필요한 사안임</li> </ul>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과, 지방세 감면 제외 부동산의 종류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확대, 지방세 면제 특례 적용 시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취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 (법률 제16865호, 2020.1.15. 공포·시행)되었음.
  - ※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준용해오던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였음.
-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지방세 면제 대상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0355호, 2020.1.15. 공포·시행) 하였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면제 범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의 이관·신설 사항, ‘감면 제외대상’ 준용 등 근거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조문별 세부 내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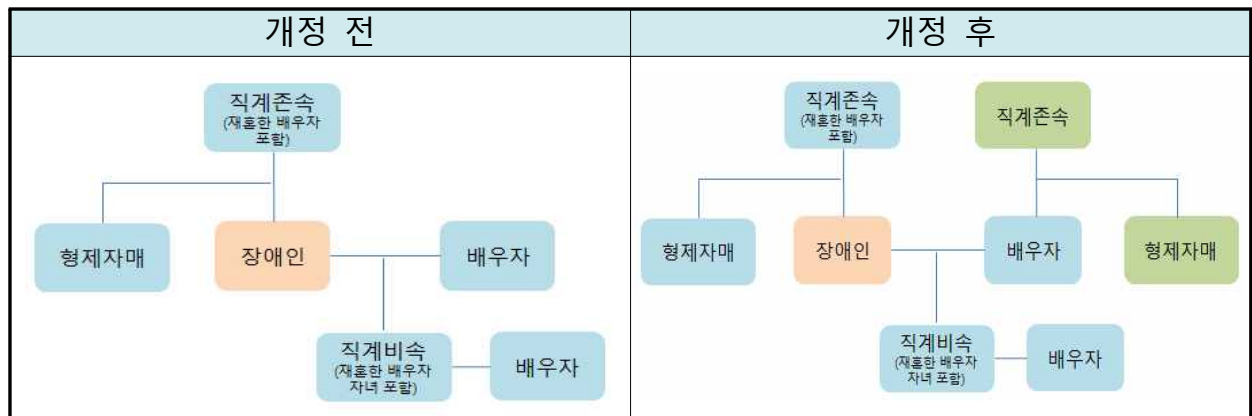
### 1)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공동명의 대상 확대(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면제요건에,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까지 확대하고, 세대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면제요건 확인 서류에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추가하려는 것임.

※ 동일세대 확인 증빙서류에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추가

※ 영주 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만 적용(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도 영주자격에 한정)

< 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대상 변경 사항(지특법·조례 동일) >



- 한편, 「지방세특례 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전 1~3급)에 대하여 다양한 지방세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전 시각 장애 4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추가 규정해오고 있음.

※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 시각장애등급 중증(중전 1~3급) 지원

※ 본 조례에 의한 감면(중전 1~4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서울시의 경우에도 본 조례 제정(1994. 12. 31.)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금번 개정을 통해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바, 장애인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에 따른 시각장애인(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 서울시 감면 현황 >

( 단위 : 건, 천원 )

연 도	구 분		합 계	취득세	자동차세
2019	합계	건수	905	15	890
		금액	129,421	25,694	103,726
	내국인	건수	901	15	886
		금액	128,936	25,694	103,242
	외국인	건수	4	0	4
		금액	48	0	484
2018	합계	건수	985	13	972
		금액	130,462	19,935	110,527
	내국인	건수	983	13	970
		금액	130,262	19,935	110,327
	외국인	건수	2	0	2
		금액	200	0	200
2017	합계	건수	931	21	910
		금액	135,415	29,205	106,209
	내국인	건수	929	21	908
		금액	135,215	29,205	106,010
	외국인	건수	2	0	2
		금액	200	0	200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①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도 장애정도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여 중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우대하려는 「장애인 복지법」 등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 ②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 유독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게만 시세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아닌지,
- ③ 비록 소액이지만, 2019년도에 1억 3천만원(905건)의 감면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운영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조례에 따른 시각장애인 감면 요건\*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 대상 장애인 분류 체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전 장애등급 1~3급))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한 조례 상 지방세 면제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무리하게 법문을 마련함으로써 지나치게 조문이 길고 해석이 난해한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취지에 맞는 조문 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에 의한 지방세 면제 요건(중전 시각장애등급 4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등급제(1급~6급)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19.7.1.)〉**

- 중전 장애등급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전 장애등급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관련법령)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등은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시각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등은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시각	<p>※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p>

현행	개정안	비고(관련법령)
<p>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u>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u>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u>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u>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lt;개정 2020. 1. 15.&gt;  <u>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u>  <u>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u>  <u>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u>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lt;신설 2020. 1. 15.&gt;</p>

현 행	개 정 안	비고(관련법령)
<p>〈신 설〉</p> <p>※ 외국인 가정보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추가</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p>	

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 규정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 안 제7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정되었는바,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본 감면 근거 규정의 이관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세목으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일괄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18년말 국세인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감면 적용 등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관한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1.15. 공포·시행)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p>	<p>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 <u>법 제78조의3</u>  <u>제1항제1호</u>-----                      -----                      -----                      -----                      -----                      -----                      -----.</p>

※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세 감면 내역 없음

**3)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 근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본 조례에 준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 감면 제외 부동산의 종류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법률 제16865호, 2020.1.15. 공포·시행)한 사항을 준용하려는 것임.

**<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역 >**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1.15] [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
<p>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1.15] [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
<신 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신 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신 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신 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신 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 체계 정비에 따른 준용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동일 사안에 대한 「지방세특례 제한법」의 감면 범위를 넘어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조례상 감면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예비적으로 해당 감면 조항을 무리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조문의 가독성 문제에 대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도시재생실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의견으로 우수건축 자산 및 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한옥의 경우 종로·성북구는 구세감면조례로 한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의 감면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재무국은 입법예고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자치구 조례 등을 감안하여 별도 개정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본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는바, 향후 제출의견의 취지 및 자치구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요구</li> <li>-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한옥의 경우 종로·성북구는 구세감면조례로 한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의 감면신설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li> <li>- 입법예고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자치구 조례 등 별도 개정검토가 필요한 사안임</li> </ul>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 참 고 자 료

###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비교표 -

현 행	개 정 안	비고(관련법령)
<p>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p>	<p>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p>	<p>※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lt;개정 2020. 1. 15.&gt;</p>

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

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 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 외국인 가정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추가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  
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  
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  
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  
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  
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 이라 한다)로 가  
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  
음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  
-----.

⑤ ----- 제3항-----  
-----

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  
-----  
-----  
-----  
-----  
-----  
-----  
-----  
-----  
-----

⑥ ----- 제3항 -----  
-----  
-----  
-----  
-----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  
-----  
-----

※ 지방세법(제141조~제147조)

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차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  
-----  
-----  
-- [같은 법 제146조제3항](#)-----  
-----.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  
-----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  
-----  
-----  
-----  
-----  
-----  
-----  
-----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



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  
 -----  
 -----  
 ----- 같은 법 제146조제3항 -----  
 -----  
 -----.

② -----  
 -----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 지방세법(제141조~제147조)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  
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  
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  
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  
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법 제146조제3항](#)-----  
-----  
-----.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  
-----  
-----  
-----  
-----  
----- [같은 법](#)  
[제146조제3항](#)-----  
-----  
-----.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  
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지방세법(제141조~제14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

다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